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79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이학영 · 한민수 · 김 윤
강준현 · 김주영 · 위성곤
서미화 · 이정문 · 정태호
전용기 · 최혁진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튼튼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호다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 격사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나. (생 략)	2.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 조제1항의 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